

2024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I. 추경예산 개요

1. 세 입

- 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액은 25조 4,141억 1천 1백만원으로, 당초 예산(25조 1,195억 1천 3백만원)보다 3.8%(9,398억 7천 2백만원) 증액한 수준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	증감		증감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24,474,238	24,474,238	25,414,111	939,872	939,872	3.8	3.8	
지방세수입	24,235,274	24,235,274	24,235,274	-	-	-	-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119,338	119,338	119,338	-	-	-	-
	임시적 세외수입	116,448	116,448	123,643	7,195	7,195	6.2	6.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816	1,816	1,816	-	-	-	-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1,362	1,362	1,362	-	-	-	-
보전수입등	보전수입등	-	-	932,677	932,677	932,677	100.0	100.0

○ 추가경정예산 주요 세목별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예 산 액					비 고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42,099	42,099	981,971	939,872	939,872	
보전수입등내부거래	-	-	932,677	932,677	932,677	
순세계잉여금	-	-	932,677	932,677	932,677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	(283천원)	(283천원)	(283천원)	
세외수입	42,099	42,099	49,294	7,195	7,195	
공유재산매각수입금	42,099	42,099	49,294	7,195	7,195	

2. 세 출

- 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3조 2,137억 9천 만원으로, 기정예산 3조 1,426억 4천만원 대비 711억 5천만원(2.3%) 증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증감률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3,142,642	3,142,642	3,213,791	71,149	71,149	2.3%	2.3%	
행정관리	소 계	916,917	916,917	940,357	23,440	23,440	2.6%	2.6%
	행정운영경비	853,467	853,467	876,722	23,255	23,255	2.7%	2.7%
	재무활동	15,981	15,981	16,166	185	185	1.2%	1.2%
	사업비	47,469	47,469	47,469	-	-	-	-
교 부 금	2,225,725	2,225,725	2,273,434	47,709	47,709	2.1%	2.1%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별	2024 예산		2024예산 (추경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정		증감		증감률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1,855,572	1,855,572	2,111,014	255,442	255,442	13.8	13.8
인력운영비(통합편성)	135,818	135,818	159,072	23,254	23,254	17.1	17.1
기타직보수	122,128	122,128	135,822	13,694	13,694	11.2	11.2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13,690	13,690	9,560	23,250	23,250	69.8	69.8
공유재산 반환금	-	-	184,479	184,479	184,479	100	100
재정보전금	1,719,754	1,719,754	1,767,463	47,709	47,709	2.8	2.8
국고보조금 반환	-	-	(389천원)	(389천원)	(389천원)	100	100

II. 검토의견

1. 재무국 세입예산

- 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24조 4,742억 3천 8백만원) 대비 3.8%(9,398억 7천 2백만원) 증액된 25조 4,141억 1천 1백만원 수준임.
- 세입과목별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은 “세외수입”의 ‘공유재산매각수입금’(7,195백만원)과 “보전수입등내부거래”의 ‘순세계잉여금’(9,326억 7천 7백만원) 및 ‘국고보조금사용잔액’(28만 3천원)의 3개 과목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임.

〈추가경정예산 주요 세입과목별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합 계	24,474,238	25,414,111	939,872	3.8%
세외수입	237,602	244,797	7,195	3.0%
공유재산매각수입금	42,099	49,294	7,195	17.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932,677	932,677	100%
순세계잉여금	-	932,677	932,677	1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	(283천원)	(283천원)	100%

가. 세외수입(공유재산매각수입금) 증액

- 재무국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 중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의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420억 9천 9백만원)* 대비 17.1%(71억 9천 5백만원) 증액한 492억 9천 4백만원 수준임.

* 가양동 CJ 공장부지 매각대금 (20,314,588천원), 증산4도심지구 손실보상액 (409,217천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재무국 합계	24,474,238	25,414,111	939,872	3.8%
세외수입	237,602	244,797	7,195	3.0%
공유재산매각수입금	42,099	49,294	7,195	17.1%

-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에 따른 수입(특별징수)을 계상하는 세입 과목으로,
 - 본 추가경정 세입예산의 편성은 기정예산 중 강서구 ‘가양동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 사유재산의 최종 매각결정에 따라 실시한 감정평가에서 해당 부지의 매각대금이 증가(당초(20,315백만원)* 대비 35.4%, 71억 9천 5백만원)함에 따라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임.

- CJ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사유지 매각수입 증액분 (7,194,842천원)

○ 세부 산출내역

: 27,509,430천원 (2024년도 공유재산심의 결과에 따른 최종 매각 결정가액)

- 20,314,588천원 (2024년도 본예산 편성액)

※ 11,950,320천원 (공시지가) x 1.8 (최근 3년간 수익계약 공시지가 대비 매각 가격률)x0.9444 ('23년도 지가변동률)

○ 2024년도 공유재산심의 시 최종 매각가격 산출산식

[감정평가액 (25,531,150천원) X 매각 가산비율 (107.6%)] + 감정평가수수료 (37,907천원)

〈 2024년도 재산관리과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증감률	주요 증감 내역
세외수입	56,729	7,195	63,924	12.7	
임시적세외수입	42,192	7,195	49,387	17.1	○ 가양동 C공장부지 사유재산 매각 대금 증액분
재산매각수입	42,099	7,195	49,294	17.1	
공유재산매각수입	42,099	7,195	49,294	17.1	
기타수입	93	-	93	-	
그외수입	93	-	93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정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221	재산매각수입	
221-03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1.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매각계획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입 2. 공유재산과 타인재산의 교환차액수입

- 다만, 재무국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의 결산률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52.0%, 2021년 14.4%, 2022년 104.3%, 2023년 110.9%로 나타나 매년 과도한 세입추계 오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 금년에도 본예산 편성 후 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당초 예산의 17.1%(71억 9천 5백만원)를 증액 편성하는 것은 세입 당해연도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른 적기 예산 투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인바,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정확한 세입 예산편성이 요구되는 세입과목이라고 하겠음.

〈 연도별 공유재산매각수입 징수 실적 및 예산액 〉

(단위 : 백만원)

2020		2021		2022		2023		2024 편성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57,957	30,110	106,512	15,318	52,518	54,780	147,870	164,007	(당초) 42,099 (추경) 49,294 증 7,195
결산률: 52.0%		14.4%		104.3%		110.9%		

※ 본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증액 편성과 관련하여, 세출 추경 감액 사업 "공유재산 반환금*"에서는 매각 기준일(2024.5.20.) 이후의 미사용분 대부료를 감액하여 반환 (1억 8,448만원)하는 별도 세출 예산을 편성(검토 생략)하고 있음.

*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세입) 관련' 추가경정 세출 예산 '공유재산 반환금'

1) 사업 목적 :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기 납부된 대부료를 반환처리하여 원활한 대부 관련 업무를 추진

2) 사업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6조

3)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24.1. ~ 12.
- 사업내용 :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납부된 대부료 미사용분 반환
 - 대상재산 : 강서구 가양동 77-2번지 등 12필지(토지 2,020㎡)
 - 대부계약 : 298,758,000원(구세·VAT제외, 대부기간: 024.1.1.~12.31)
 - 공유재산 매매계약 체결일('24.5.20.) 기준으로 미 사용대부료 반환

4) 추경(안) 및 산출근거

- 추경(안) : 184,479천원(증 184,479천원)

(단위 : 백만원)

통계목	기정예산 (A)	요구액 (B)	추경예산안 (A+B)	산출내역
계	-	185	185	
기타반환금 등	-	185	185	○ 반환금 : 184,478,984원 = 298,758,000원 - 114,279,016원 - 기납부 대부료 : 298,758,000원 - 사용액 114,279,016원 [대부료×사용일수(140일/366일)] ※ 계약체결일 : 2024.5.20.(월)

나. 순세계잉여금(순증)

○ 재무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추가경정세입예산은 전년 (3조 2,548억 2천 7백만원) 대비 $\Delta 71.3\%$ (2조 3,221억 5천만원) 감액된 9,326억 7천 7백만원 수준으로, 2023회계연도에 이어 감소하고 있음.

※ 2023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편성 규모(3조 2,548억원)

※ 결산상 잉여금 = 세입결산 수납액 - 세출결산 집행액

※ 순세계 잉여금 = 결산상잉여금 - 이월액 - 국비반납금

〈20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산출〉

(단위 : 억원)

구분	예산현액	세입결산 수납액	세출결산 집행액	결산상잉여금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2023	51조 4,900	50조 7,586	47조 4,605	3조 2,981	1조 5,347	1,174	1조 6,460
일반회계	36조 5,074	36조 2,153	34조 9,285	1조 2,868	2,562	979	9,327
특별회계	14조 9,826	14조 5,433	12조 5,320	2조 113	1조 2,785	195	7,133
2022	53조 4,688	55조 5,717	50조 2,766	5조 2,951	1조 740	832	4조 1,379
증 감	$\Delta 1$ 조 9,788	$\Delta 4$ 조 8,131	$\Delta 2$ 조 8,161	$\Delta 1$ 조 9,970	4,607	342	$\Delta 2$ 조 4,919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1,558억원) 제외,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반납예정 금액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편성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초과세입금	집행잔액
	금액	전년 대비증가율(%)		
'24년 1회	9,327억원	$\Delta 71.3$	$\Delta 3,092$ 억원	1조 2,419억원
'23년 편성	3조 2,548억원	$\Delta 44.6$	2조 3,945억원	8,604억원
'22년 편성	5조 8,712억원	69.4	5조 3,401억원	5,311억원
'21년 편성	3조 4,653억원	50.4	2조 9,298억원	5,355억원
'20년 편성	2조 3,044억원	7.6	1조 8,407억원	6,224억원
'19년 편성	2조 1,419억원	$\Delta 11.9$	1조 6,176억원	6,000억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장	관	항	목	설	정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0 보전수입 등					
711 잉여금					
			711-01 순세계잉여금	1. 「지방회계법」 제19조에서 규정한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액,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한 이월금, 지방회계법 제19조에 의한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 전년 대비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감소(△71.3%, 2조 3,221억 5천만원)의 주요 원인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나타난 지방세수입 세입 규모의 역성장과 세입 결손의 발생 등 지방세수입 징수실적 저조에 있는 것임.

※ 2023회계연도 지방세수입 결산액은 예산현액(24조 1,122억원) 대비 2,494억원(1.0%) 부족 징수된 23조 8,628억원, 전년 세입(2022회계, 26조 1,638억원) 대비 2조 3,010억원 세입 감소

〈 연도별 지방세수입 결산 현황 〉

(단위 : 억원,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액	123,053	119,130	127,356	137,875	141,258	155,554	170,965	182,213	195,524	200,237	230,956	241,112
결산액	122,441	117,916	132,496	156,244	165,693	178,171	191,033	204,581	233,930	260,012	261,638	238,628
결산율	99.5	99.0	104.0	113.3	117.3	114.5	111.7	112.3	119.6	129.9	113.3	99.0
증감률	-	-3.7	12.4	17.9	6.0	7.5	7.2	7.1	14.3	11.1	0.6	-8.8

○ 한편, 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9,326억 7천 7백만원)은 법정 의무경비*(3,160억 2천 4백만원)와 통합안정화기금 조성(3,083억 2천 7백만원)에 우선 사용하고, 이를 제외한 재정투자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 규모는 3,083억 2천 7백만원 수준임.

* 자치구 전출금, 교육청 전출금, 타회계 전출, 감채기금 적립 등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용처(가용재원 산출 과정)〉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예산	2023년결산	실집행액	정산잔액	비고
순세계잉여금				932,677	
법정의무경비	12,384,517	12,171,384	11,902,469	316,024	※ 소방 제외
교육청 전출금	3,841,602	3,719,281	3,631,999	87,282	
지방교육세	1,818,502	1,718,031	1,720,730	△2,699	지방교육세×100%
담배소비세	261,992	259,475	252,904	6,571	담배소비세×45%
보통세	1,761,108	1,741,775	1,658,365	83,410	보통세×10%
자치구 교부금	6,371,086	6,338,141	6,164,535	173,606	
조정교부금	4,148,696	4,125,977	4,032,079	93,898	
보통세분	4,128,396	4,106,167	4,011,779	94,388	보통세×22.6%
레저세분	20,300	19,810	20,300	△490	레저세×20%
재정보전금	1,724,731	1,708,967	1,661,257	47,710	특별세분 재산세×100%
징수교부금	467,659	503,197	471,199	31,998	시세×3%(시 직접 징수액 제외)
타회계 전출금	2,155,676	2,122,501	2,092,362	55,136	※ 소방 제외
도시개발	1,290,693	1,284,966	1,246,372	38,594	재산세 도시지역분×70%
교통사업(주차계정)	184,384	183,567	178,053	5,514	재산세 도시지역분×10%
주택사업(재촉계정)	184,384	183,567	178,053	5,514	재산세 도시지역분×10%
주택사업(도정계정)	184,384	183,567	178,053	5,514	재산세 도시지역분×10%
소방	311,831	286,834	311,831	△24,997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1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8,327	(순세계잉여금 법정정산금)×50%
가용재원				308,327	

〈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 경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다음 각 목을 공제한 금액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에 따른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지방자치법」 제196조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다.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의무적 지출액**

2. 통합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3. 재정안정화 계정의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과 그 밖의 수입
4. 그 밖에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을 위한 수입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하고,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제1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에 사용하는 총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지방채원리금 상환
2.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채 또는 공단체의 상환을 위해 출자금, 보조금 또는 용자금
3. 해당 연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4.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5. 통합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 및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
6. 그 밖에 지방채 및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 세입예산 초과 징수분과 집행잔액 규모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한 것은 ‘세입추계 정확성의 제고’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 금번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는, 2013회계연도 이후 10년만에 발생한 지방세 세입의 결손* 발생과, 전년 대비 세입의 역성장에서 유발된 것으로 세입의 결손은 예산 또는 사업의 조정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재정건전성 악화를 유발할 수도 있는바, 세수 확충을 위한 재무국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음.

※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2013회계연도 이후 10년만에 2,494억원의 세입 결손 발생

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개별주택가격 공시 지원 사업)

- 본 사업은 “개별주택가격 공시 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 정산 결과 반납해야 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8만 3천원을 세입에 편성하려는 것임.

〈추가경정예산 주요 세입과목별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	283천원	283천원	순증

- 지방재정법(제34조)에서는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는, 국고보조금의 경우 전년도 국고보조사업의 집행 잔액 발생액을 전망하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보전수입등내부거래 - 보전수입 등 - 전년도 이월금)’으로 당초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예비비및기타-반환금 기타)’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에 따라 재무국에서는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2023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28만 3천원)을 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세입에 반영하여 국고에 반환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장 관 항	목	설 정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0 보전수입 등	
	712 전년도 이월금	
	712-01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고에 반납 예정인 금액 ※ 시·군·구에서 반납하는 금액은 시·도에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처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800	예비비및기타		
	802 반환금기타	01. 국고보조금 반환금	
		1. 지방자치단체가 국고에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시·도에서 국고보조 시·군·구 반환금을 세입조치할 과목이 없으므로 시·군·구 반환금은 시·도의 세입세출외 현금에 예치후 시·도에서 반납 조치 2.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 ※ 중앙부처가 반납금을 고지한 즉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되, 예산에 반납액이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산 후 최초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반납금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정확한 반납액의 예측이 곤란하여 정확한 금액을 다음연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겠으나,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적기에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기 위한 재무국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2. 재무국 세출예산

- 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3조 2,137억 9천 만원으로 기정예산 3조 1,426억 4천만원 대비 711억 5천만원(2.3%) 증액한 수준임.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증감률		
	예산		추경예산	증감		증감률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3,142,642	3,142,642	3,213,791	71,149	71,149	2.3%	2.3%	
행정관리	소 계	916,917	916,917	940,357	23,440	23,440	2.6%	2.6%
	행정운영경비	853,467	853,467	876,722	23,255	23,255	2.7%	2.7%
	재무활동	15,981	15,981	16,166	185	185	1.2%	1.2%
	사업비	47,469	47,469	47,469	-	-	-	-
교 부 금	2,225,725	2,225,725	2,273,434	47,709	47,709	2.1%	2.1%	

- 재무국에서는 “인력운영비(통합편성)”, “공유재산 반환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반환” 사업에 대한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임.

〈재무국 추가경정 세출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별	2024 예산		2024예산 (추경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정		증감		증감률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1,855,572	1,855,572	2,111,014	255,442	255,442	13.8	13.8
인력운영비(통합편성)	135,818	135,818	159,072	23,254	23,254	17.1	17.1
기타직보수	122,128	122,128	135,822	13,694	13,694	11.2	11.2
공무직무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13,690	13,690	9,560	23,250	23,250	69.8	69.8
공유재산 반환금	-	-	184,479	184,479	184,479	100	100
재정보전금	1,719,754	1,719,754	1,767,463	47,709	47,709	2.8	2.8
국고보조금 반환	-	-	(389천원)	(389천원)	(389천원)	100	100

가. 인력운영비(통합편성)

-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본청 및 사업소 전체 직원(일반직, 임기제, 공무원)의 급여 및 수당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8,758억 7천만원으로 기정 예산(8,526억 1천 5백만원) 대비 2.7%(232억 5천 5백만원) 증액한 수준임.
-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은 ‘기타직 보수(101-02)’에 일반임기제 공무원 현원 증가(증 132명) 및 2024년 처우개선비(2.5%) 반영을 위하여 137억원 증액 편성하고,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에 공무원의 실 퇴직 인원 증가(증 23명) 및 4대 보험료 실행액 증가분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96억원 증액하려는 것임.

〈 인력운영비(통합편성) 추가경정예산 총괄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875,870,260	852,615,471	23,254,789
보수	633,843,645	633,843,645	-
기타직보수	135,822,193	122,127,800	13,694,393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수	82,954,505	82,954,505	-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23,249,917	13,689,521	9,560,396

- 다만, 재무국의 “인력운영비” 사업에서는 매년 고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본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이를 증액하려는 것으로, 이로 인해 또다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건전재정을 위한 인력 운영비(통합편성) 운영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 2023회계연도 합계 181억 3천만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인력운영비의 범위 (기준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 -

현 행			개 정 (2024)		
[별표10]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 5.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input type="checkbox"/> 인력운영비 <input checked="" type="radio"/> 기준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			[별표10]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 5.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input type="checkbox"/> 인력운영비 <input checked="" type="radio"/> 기준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		
〈 인력운영비의 범위 〉			〈 인력운영비의 범위 〉		
목 그룹	편 성 목	통 계 목	목 그룹	편 성 목	통 계 목
100 인건비	101인건비	보수, 기타직보수,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100 인건비	101인건비	보수, 기타직보수,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성과상여금, 직급보조비
200 물건비	204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300 경상이전	303포상금	성과상여금	300 경상이전	304연금부담금등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 등
	304연금부담금등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 등			

※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기준인건비제도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구분

나. 재정보전금

- “재정보전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조 7,674억 6천 3백만원으로 기정 예산(1조 7,197억 5천 4백만원) 대비 2.8%(477억 9백만원*) 증액한 수준으로, 2023회계연도 공동재산세 전출금 정산 결과 미지급분을 추가 편성하여 자치구에 교부하려는 것임.

* 추경액(477억원): '23회계 결산액(1조 6,797억원) - '23년 교부액(1조6,320억원)

※ 재정보전금: 지방세기본법상 재산세(특별시분) 징수액 등을 전액 자치구에 균등 교부하는 법정경비 ‘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

〈재정보전금 세출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

통계목	기정예산	요구액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1,719,754	47,710	1,767,463	
재정보전금	1,719,754	47,710	1,767,463	○ 2023년 공동재산세 전출금 결산결과 미지급액 47,709,483 천원 = 2023년 특별시분 재산세 결산액 1,679,726,592천원 - 2023년 교부액 1,632,017,109천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기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300	경상이전		
	308 자치단체등 이전	05.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비 1.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 이외에 자치구에 교부되는 재원조정경비	

- 재정보전금(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 = 공동재산세전출금+면허세보전금)은 「지방세기본법」(제9조·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제4조·제5조)에 근거¹⁾하여,
 - 2008년부터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따라 자치구세인 재산세(부동산) 징수액의 50%를 시세인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하여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교부함으로써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의 ‘공동재산세전출금’과
 - 2001년 “자동차등록 면허세” 폐지에 대한 자치구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특별시세인 자동차세(주행분)를 재원으로 2002년부터 자치구에 교부하는 ‘면허세 보전금’으로 구성되는 법정* 경비로 ‘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임.

1) 「지방세 기본법」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8조제1항의 보통세인 특별시세로 보고 구분 재산세는 같은 조 제3항의 보통세인 구세로 본다.
 제10조(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① 특별시장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관할구역의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4조(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시장은 「지방세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에 균등배분하여 교부한다.
 제5조(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절차 등) ① 제4조의 공동재산세 전출금은 특별시분 재산세가 징수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자치구에 교부한다. 다만, 징수금액이 적어 교부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징수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에 정산하여 교부한다.

〈 공동재산세전출금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교부액	1,698,032	1,929,595	1,751,370	1,577,165	1,300,009

- ※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비율 :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이후 50%
- ※ 25개 자치구 균등 교부
- ※ 「지방세법」 부칙(2000.12.29.개정) 제8조 ② 2002년 이후에 적용될 주행세율은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보전(2,000억원)과 운수업에 대한 보조 등에 대한 소요액을 감안하여 관계부처간에 협의·결정한다.

〈 자동차등록 면허세 감소분 자치구 교부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교부액	28,900	29,240	29,480	30,260	30,780	31,640

〈 재정보전금 집행 현황 〉

(단위: 천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5월 말
예산액(현액)	1,607,945,148	1,781,630,523	1,959,074,763	1,790,745,652	1,767,463,483
집행액	1,607,945,148	1,781,630,523	1,959,074,763	1,727,271,761	14,450,000
집행률	100%	100%	100%	96.5%	0.8%

* 2023년 재정보전금 중 공동재산세 전출금에서 예산현액 1조 7,615억원보다 최종 교부시기인 '23.12.29.까지의 특별시분 재산세 징수 총액(교부 총액)이 1조 6,980억원으로 적어 635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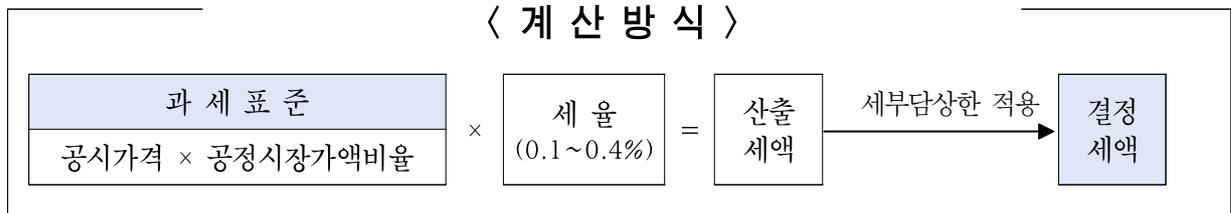
- 다만, 재산세는 보유세로 경제여건 등 환경 영향이 적고, 시가표준액 등 과세표준 또한 비교적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며, 타 세목에 비해 체납에 따른 채권확보도 비교적 쉬운 세목이며, 비교적 정확한 추계가 가능한 세목이나, 세입추계 오차로 인하여 매년 대규모 재정보전금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액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구와의 협조를 통한 재산세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재산세 예산 대비 결산 추이〉

(단위: 억원, %)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수납액	예산현액대비	
				증감액	수납률
2023	35,221	35,221	34,749	-472	98.7
2022	38,276	38,276	39,189	913	102.4
2021	33,946	33,946	36,461	2,516	107.4
2020	29,990	29,990	32,040	2,050	106.8
2019	26,151	26,151	28,411	2,260	108.6

〈 계 산 방 식 〉



-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 ※ 공동재산세 물건 중 항공기, 선박 및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제외됨(지방세기본법 제9조)

○ 또한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른 재정보전금 균등 교부 후에도 여전히 자치구 간 재산세 세입 규모 차이가 최대 5.5배에 달하고 있는바, 자치구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공동재산세 제도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보완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 2023회계연도 결산, 강남 4,468억원, 강북 819억원

〈 재정보전금에 따른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 효과 〉

(결산액 기준)

2020년도	○ 강남, 강북구 간 재산세 세입격차가 21.9배(강남 6,512억, 강북 298억)에서 5.1배(강남 3,870억, 강북 763억)로 완화
2021년도	○ 강남, 강북구 간 재산세 세입격차가 25.9배(강남 7,555억, 강북 292억)에서 5.3배(강남 4,473억, 강북 841억)로 완화
2022년도	○ 강남, 강북구 간 재산세 세입격차가 26.3배(강남 8,354억, 강북 318억)에서 5.4배(강남 4,938억, 강북 920억)로 완화
2023년도	○ 강남, 강북구 간 재산세 세입격차가 25.9배(강남 7,591억, 강북 294억)에서 5.5배(강남 4,468억, 강북 819억)로 완화
2024년도 (예산액 기준)	○ 강남, 강북구 간 재산세 세입격차가 26.3배(강남 7,420억, 강북 283억)에서 5.4배(강남 4,386억, 강북 818억)로 완화

〈2023년도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한 재정격차완화 효과, 강북구 기준〉

- 2023년 결산액 기준, 강북구 기준 -

(단위 : 억원/배)

구 분	2023년 당초 재산세(A)	조정(공동과세 균등배분)			증감액 (B-A)	세액대비 격차	
		자치구분 재산세(50%)	특별시분 재산세(50%)	조정후 재산세(B)		당초	조정후
계	33,595	16,797	16,797	33,595	0	-	-
종로구	1,138	569	672	1,241	103	3.9	1.5
중 구	1,696	848	672	1,520	△176	5.8	1.9
용산구	1,680	840	672	1,512	△168	5.7	1.8
성동구	1,108	554	672	1,226	118	3.8	1.5
광진구	708	354	672	1,026	318	2.4	1.3
동대문	616	308	672	980	364	2.1	1.2
중랑구	398	199	672	871	473	1.4	1.1
성북구	609	305	672	976	367	2.1	1.2
강북구	294	147	672	819	525	1.0	1.0
도봉구	296	148	672	820	524	1.0	1.0
노원구	561	281	672	953	391	1.9	1.2
은평구	553	277	672	949	395	1.9	1.2
서대문	574	287	672	959	385	2.0	1.2
마포구	1,358	679	672	1,351	△7	4.6	1.7
양천구	909	455	672	1,127	217	3.1	1.4
강서구	1,080	540	672	1,212	132	3.7	1.5
구로구	647	324	672	996	348	2.2	1.2
금천구	442	221	672	893	451	1.5	1.1
영등포	1,592	796	672	1,468	△124	5.4	1.8
동작구	783	392	672	1,064	280	2.7	1.3
관악구	583	291	672	963	381	2.0	1.2
서초구	4,212	2,106	672	2,778	△1,434	14.3	3.4
강남구	7,591	3,796	672	4,468	△3,124	25.9	5.5
송파구	3,076	1,538	672	2,210	△866	10.5	2.7
강동구	1,089	545	672	1,217	127	3.7	1.5

다. 국고보조금 반환(개별주택가격 공시 지원 사업)

- 본 사업은 개별주택가격 공시 지원 국고보조금 정산 결과 반납해야 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을 합한 38만 9천원을 편성하려는 것임.

〈국고보조금 반환금 세출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별	2024 예산		2024예산 (추경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정		증감		증감률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1,855,572	1,855,572	2,111,014	255,442	255,442	13.8	13.8
국고보조금 반환	-	-	(389천원)	(389천원)	(389천원)	순증	순증

- 지방재정법(제34조)은 예산총계주의(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규정) 원칙을 규정하고,
 -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전망하여 당초 세입에 편성하고, 세출예산에는 반환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재무국은 2023회계연도 개별주택가격 공시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잔액 및 발생이자(38만 9천원)를 반납하기 위해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장	관	항	목	설	정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0		보전수입 등		
		712	전년도 이월금		
			712-01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고에 반납 예정인 금액 ※ 시·군·구에서 반납하는 금액은 시·도에서 세입세출외현 금으로 처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800	예비비및기타		
	802 반환금기타	01. 국고보조금 반환금	
		1. 지방자치단체가 국고에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시·도에서 국고보조 시·군·구 반환금을 세입조치할 과목이 없으므로 시·군·구 반환금은 시·도의 세입세출외 현금에 예치후 시·도에서 반납 조치 2.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 ※ 중앙부처가 반납금을 고지한 즉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되, 예산에 반납액이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산 후 최초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반납금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재무국 국고보조금 세출 편성〉

(단위:천원)

통계목	기정예산	증감액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국고보조금 반환	-	389	389	국고보조금 잔액 283,200원 및 반환이자 105,600원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경우는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어려운 측면 (회계연도 종료→사업정산→세입예산 편성)은 있겠으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처리 기준(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재무국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정찬일	입법조사관	최석훈
------	-----	-------	-----